

# 석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

## - 산업자원부 -

- 산업자원부는 석유정제업의 조기 대외개방과 천연가스 수출입의 자유화를 위해 석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5월 2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.
-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정제업은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, 이번 법개정에 따라 등록제의 시행시기가 금년중으로 앞당겨지게 되었다.
- 현행의 석유정제업 허가제하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은 50%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, 등록제의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제한은 완전히 철폐되고, 저장시설 등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석유정제업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.
- 참고로 그간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으로 되어 있던 주유소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5월중 전면적으로 개방될 계획이다.
- 한편 정부는 천연가스 수출입의 경우, 현재 수출입 계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, 천연가스 대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.
- 다만, 당장의 수입자유화는 천연가스의 수급불안 및 과당경쟁에 따른 도입협상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, 예고기간을 두고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.
-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가급적 상반기중에 법개정을 완료하고,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며,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시에는 법률에 따른 개정사항 뿐만 아니라 석유유통분야 등에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.
- 이번 석유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사실상 마무리되게 되며,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로 금년중 3~5억불 정도의 외자유치 효과와 함께 석유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기대되고 있다.
- 그러나, 석유산업의 전면적인 조기 자유화로 국내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산업자원부는 업계,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. ④